■ 전파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6. 7. 12.>

(앞쪽)

무선설비 시설개요서

(위성방송국 및 아마추어국 외의 무선국)

① 목적		② 무선국 종별				
③ 개설 용도				④ 이동범위		
⑤ 통신사항						
⑥ 통신상대방	(1) 허가번호 (2) 장치번호		⑦ 운용시간		⑧ 운용개시 예정일	
⑨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	(1) 송신소					
	(2) 수신소					
	(3) 통신소					
	(4) 송신안테나의 위치		(5) 수신안테나의 위치		(6) 이동체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	
	동경 도 분 초 북위 도 분 초		동경 도 분 초 북위 도 분 초			
⑩ 희망하는 전파형식·주파수 및 안테나 공급전력	(1) 장치별	(2) 전파형식	(3) 주파수(㎑, ㎒)	(4) 안테나공급전력(W, ㎾)		
⑪ 선박 또는 항공기 관련 사항	(1) 소유자		(2) 선박명 (항공기형식)		(3) 등록번호	
	(4) 용도		(5) 총톤수		(6) 항행구역	
	(7) 여객 정원		(8) 주정박항 (주기장)		(9) 전체길이	
⑫ 정보통신 공사업자 및 준공 예정일	(1) 성명(상호 또는 대표자명)			(2) 생년월일		
	(3) 소재지	(전화번호):		(4) 정보통신 공사업등록번호		
	(5) 준공 예정일			(6) 검사 희망지		
⑬ 그 밖의 사 항		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작성방법

1. ①란: 무선국 개설목적에 해당하는 업무의 분류(고정업무, 해상이동업무 등)를 적습니다.
2. ③란: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사용하는 용도(전기통신역무용, 철도사업용, 어업통신용 등)를 적습니다.
3. ④란: 이동할 수 있는 무선국만 적습니다.
4. ⑤란: 무선국의 용도별로 행하는 세부 통신내용을 적습니다.
5. ⑥란: 통신상대방이 고정된 위치의 무선국인 경우에는 허가번호를 적고, 통신상대방이 장치별로 다른 경우에는 장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 또한, 통신상대방이 복수인 경우는 ‘,’로 구분하고, 통신상대방이 이동할 수 있는 무선국인 경우에는 동일 통신망의 무선국종을 같이 적습니다.
6. ⑦란: 계속 운용하는 경우는 "24시간", 특정시간에만 운용하는 경우에는 "몇 시부터 몇 시까지"로 적습니다.
7. ⑨란

가. (1)란 및 (2)란: 송신소와 수신소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는 송신소란에 적습니다.

나. (4)란 및 (5)란: 고정위치에 설치하는 송신안테나 및 수신안테나의 위치는 세계측지계(또는 WGS84좌표계) 좌표로 적습니다. 다만, 이동할 수 있는 무선국인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다. (6)란: 차량 등 이동체에 개설한 무선국인 경우에는 차량등록번호 등을 적고, 휴대 가능한 무선국인 경우에는 ○표를 합니다.

8. ⑪란: 총톤수는 선박에만 해당하며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명을 국문 및 영문으로 적습니다.